

2026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용자지원 계획

2026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계획

◇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'26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함

I 추진방향

- 사업 추진상황 상·하반기 점검을 통해 융자 지원대상자가 연내 사업 완료하록 유도하여 융자 실행률 제고
- 농업발전기금 운용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 육성을 위한 경영체 융자 지원 확대

II 융자개요

- ① **관련근거** : 「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」
- ② **지원예산** : 40억원
- ③ **융자대상** :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(농식품경영체 포함)
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되어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
 - * 관내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
 - 「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농식품경영체

< 지원 제외 >

-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기금 지원 사업장이 관외인 경우
-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
- 귀농인의 경우 주소지 이전 후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
- 가구당 중복지원 불가(예, 부부 동시 지원시 1인만 지원가능)
- 법인(단체)으로 지원받는 경우 법인과 법인소속 개인 중복지원 불가

④ 용자대상 사업

-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
-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사업
-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
- 농업인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
- 농업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

< 지원 제외 >

- 농지구입을 위한 자금지원
- 무허가 농업시설물(축사 포함) 개·보수 사업
-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이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
 -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등하는 등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

⑤ 용자 종류 및 한도

- 시설자금 : 2억원 이하(3년거치 5년 균등상환)
 - 농업시설물의 확충 및 개·보수 경비, 농기계 구입 등
 - 시설자금 중 초기 자본이 큰 스마트팜, 축사 신축 등에 대해서는 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
 - 운영자금
 - 가축입식, 묘목입식 자금 : 2억원 이하(3년 일시상환)
 - 사료비, 난방비 및 농자재 등 구입자금 : 2천만원 이하(1년거치 2년 균등상환)
- ※ 농업인 1인에 대한 용자금 총액(시설자금+운영자금)은 2억원 이하로 함
단, 농업법인 또는 농산물 가공업체의 용자금은 총자산금액의 30% 이하(5억원 한도)

⑥ 용자금 상환조건

- 시설자금 : 3년거치 5년 균분상환
- 운영자금(가축·묘목입식 제외) : 1년거치 2년 균분상환
- 운영자금 중 가축·묘목입식 자금 : 3년 일시상환

구 분	시설자금	운영자금	
		가축·묘목입식	사료비, 난방비, 자재구입 등
지원한도 (총2억원 이하)	2억원 이하 (스마트팜, 축사신축 등 최대 3억원 이하)	2억원 이하	2천만원 이하
사업내용	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시설물 확충, 개·보수, 농기계 구입 등	가축입식 묘목입식	사료비, 난방비 및 영농 자재 등 구입
상환조건	3년거치 5년 균등상환	3년 일시상환	1년거치 2년 균등상환
이율	1%(청년농업인* 또는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**는 0.5%)		
융자한도	• 1인당 융자금 총액 2억원 이하(융자금 상환 이전 한도액 초과 재융자 불가) - 농업법인 또는 농산물 가공업체의 농업시설자금은 총자산 금액의 30%이하(5억원 한도)		

*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~만45세 미만인 농업인

**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

III 2026년 사업개요

○ 융자규모 : 40억원(상·하반기)

○ 신청기간 : 2026. 1. 20.(화) ~ 2. 20.(금)

○ 신청절차 : 농업인(농업법인 등) → 신청서(서식1) 제출(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) → 신청서 취합 및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(읍면동 → 시)

※ 읍면동에서는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지원대상자 추천

- 사업대상자 선정 :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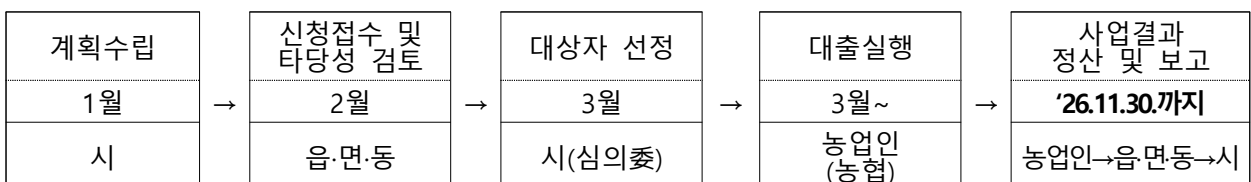
※ 신청금액이 '26년 융자 규모 초과 시 아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

구분	배점기준	배점	평가
영농경력(10점)	영농경력* 2년 단위로 1점 *농업경영체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	10	
영농규모(10점)	품목별로 5단계 배점(2, 4, 6, 8, 10점)	10	
수상경력(5점)	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자(단체)	5	
	시장급 표창 이상 수상자(단체)	4	
	공인된 단체 표창 수상자(단체)	2	
	일반 농가(단체)(미수상자)	0	

※ 영농초기 청년농업인 및 융복합사업자는 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

- 융자 실행 및 사업추진 : 금융기관(농협)을 통해 융자 실행('26.3.~)

< 사업추진 흐름도 >



IV 사후관리

① 사업추진 관리

- 읍·면·동에서는 사업대상자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현지조사 및 증빙자료 등 검토 결과를 11월 말까지 제출(서식2)
- 농업융창고 조성 등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상환 완료시까지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·관리 여부를 반기별로 현장 점검하고, 관리카드(서식3)를 작성하여 기록(市)

② 사업계획의 변경

-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(사업목적, 사업비 등)하고자 할 때에는 시에 승인을 요청하고, 시에서 검토 후 결과를 통보
- ※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금 실행 불가(또는 회수)

③ 융자금 회수 조치

-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
- 당해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-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
-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때
- ※ 기금 목적외 사용 등 융자금 회수 조치 대상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, 2년간 사업참여 배제

V 행정사항

- (읍·면·동) 사업 완료서류 검토시 증빙자료 확인 철저
 - 견적서, 세금계산서, 사진자료, 계약서, 거래내역서, 통장사본 등
 - (가축입식) 양도양수(매매)계약서(개인간 거래시), 가축입식(이력제) 관련 서류 등
 - (시설물 신축 및 개보수) 견적서, 공사세부내역서, 전중후 사진자료, 세금계산서 등
 - 사업 진행 시 현금지출 금지 안내(현금 지출시 사업비 지출 인정 불가)
- (농협)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융자금 대출신청 시 신속하게 대출하고, 상·하반기별 또는 수시로 대출실행 현황을 공유
 - 월별 상환내역과 대여금 잔액조회서를 매월 말까지 시에 제출